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8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김미애·김형동·주진우

최수진 • 김예지 • 최보윤

안상훈 • 백종헌 • 유영하

유상범 · 성일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9(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이라 한다)의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분 석"이라 한다)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원에 위 탁할 수 있다.
- ③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의10(아동학대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 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

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직원
- 3.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직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및 수사기관의 장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원의 장이 정보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 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 1의3. 제29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9(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
	이라 한다)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
	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
	를 분석할 수 있다 <u>.</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사망
	사건분석"이라 한다)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 방지
	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u>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u>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 <신 설></u>	제29조의10(아동학대사망사건 관

런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9조의9제2 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 담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 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 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 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유족,아동학대행위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및 주변인
-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 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 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직원
- 3.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직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 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정 보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 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 동등과 관련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및 수사기관의 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 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 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 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

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 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제공받 은 형사사법정보를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 부장관 및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 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제 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제 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 용방법 · 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 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 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

제71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u> 중만은 영사사법정보들 폭석</u>	<u> 의</u>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	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	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u> </u>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	·ス]
부장관 또는 보장원의 장이	정
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	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
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
는 제한할 수 있다.	
	_

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형사사법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
	_

1. (현행과 같음)

1의2.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신 설>

- 2. (생략)
- ③ (생략)
-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 (생 략) <u><신 설></u>
 - ② ~ ④ (생 략)

- 1의3.제29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 ② ~ ④ (현행과 같음)